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방범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단체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정·심의한다.

1.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촉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